

학 생 회 칙

2024

우석대학교 학생회

학 생 회 칙

- 전 문 -

우석대학교 학생회는 <黃金百萬兩 不如一教子>의 정신을 바탕으로 실력과 신념을 갖추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세계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을 계승·구현하고자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우석대학교 학생회(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우석대학교 학칙 제58조에 의거하여 구성된 자치단체로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창조적 비판능력을 함양하고 건전한 대학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본회는 우석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4조(자격) ① 본회 회원의 자격은 본교의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상태인 자는 그 기간 동안 회원의 자격이 정지 된다.

② 졸업연기자, 학점등록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본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한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③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본회의 회원은 회칙준수 의무를 지니며,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의 각종 재난 시 그 방지와 지원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학교당국과의 관계)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총학생회장이 학생회를

대표하여 학교당국과 협의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7조(기구)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학과(부)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 봉사추진위원회, 동아리운영위원회, 유학생위원회, 장애학생복지위원을 둔다.(개정 2024.04.01./2024.10.14.)

제8조(임기) 모든 기구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임 및 재임할 수 없다. 단, 졸업준비위원회의 임기는 졸업일까지로 한다.

제9조(선거)본회의 선거는 우석대학교 학생회 선거시행규정에 따른다.

제2장 학생총회

제10조(지위 및 구성)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본회의 전체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기능)① 학생총회는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보고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사항을 보고 받는다.

②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의결권을 갖는다.

제12조(의장)①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총학생회장의 사고나 궐위 시 전주캠퍼스 부총학생회장, 진천캠퍼스 부총학생회장 순으로 그 직을 대행한다.

②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의 소추가 있거나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모두 궐위 시에는 중앙운영위원에서 선출된 자가 임시 의장으로 학생총회를 진행한다.

③ 선거 미 실시로 총학생회 및 자치기구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학과(부)학회장 중에서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학생총회를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권한)①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고 받는다.

② 총학생회의 존립 및 회원전체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의 탄핵안 심의 및 의결

1.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이 회칙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전체회원 1/3

이상의 연서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2. 임시의장은 학생총회를 소집하여 탄핵안을 심의하고 총투표를 통하여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투표의 관리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선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4. 자치기구장 및 학과(부) 학회장· 부회장의 탄핵안은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개정 2024.10.14.)

제14조(소집)학생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총학생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연서나 중앙운영위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전체회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학생회장이 직접 소집한다.

4. 총회의 소집은 소집 이유를 명시하여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① 총회는 재적회원 1/3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다. 단, 13조 3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16조(지위)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라 한다)는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구이며, 학생총회의 최고의사결정을 위임받은 기구이다.

제17조(구성)① 전학대회의 대의원은 총·부총학생회장, 학과(부)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04.01. 2024,10,14,) 다만, 총학생회 및 자치기구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각 학과(부)학생회장으로 전학대회 대의원을 대신할 수 있다.

② 궐위 대의원은 재적 대의원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학기별 학생회비 배분에 관한 전학대회 대의원 구성은 전주캠퍼스, 진천캠퍼스 대의원

으로 각각 구성한다. 단, 진천캠퍼스 대의원은 ①항의 범위 내에서 구성한다. 따라서 추가로 자치기구가 구성되었을 경우 정·부회장 및 학과(부)학생회장은 대의원이 된다.(2024.10.14.)

제18조(의장) 전학대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단, 총학생회장의 사고나 궐위 시 전주캠퍼스 부총학생회장, 진천캠퍼스 부총학생회장 순으로 그 직을 대행한다. 다만, 총학생회 및 자치기구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제17조 1항에 의거 학과(부)학생회장 중에서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대회를 진행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전학대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는 매 학기 수업일수 1/3선 이전에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요구나 중앙운영위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3. 학기별 학생회비 배분에 관한 전학대회는 전주캠퍼스, 진천캠퍼스 별로 실시한다.
- ② 전학대회 안건은 전학대회 의장에 의해 상정된다. 단, 정기회의 안건은 안건상정 이전에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 ③ 정기회의 소집은 7일 전에 공고되어야 하며, 안건 설명에 대한 공고는 소집 3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④ 전학대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⑤ 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일사부재의 원칙)
- ⑥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⑦ 전학대회 회의 전 과정은 교내 신문방송사 협조를 받아 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 ⑧ 대의원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제지당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장은 발언을 제지할 수 있다.
- ⑨ 소수의견 존중을 원칙으로 한다.
- ⑩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의에서 논하지 않고 폐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다음 회기로 이월할 수 있다.
- ⑪ 선거 미 실시로 인한 당연직 대의원 부재는 재적인원에서 제외한다.
- ⑫ 개회 후 안건처리 전에 전 회의록을 낭독하고 이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⑬ 본 회의 진행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업무와 권한)전학대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1. 학생회칙 및 학생 선거시행규정 개정 또는 제정
2. 본 회의의 기본활동방향, 사업계획과 사업보고를 심의·의결
3. 학생회비에 대한 심의·의결
4.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의 결정사항을 변경·의결
5. 학생총회 소집발의와 학생투표 실시에 대한 결정
6. 총학생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학생회 회칙을 중대하게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전학대회 대의원 2/3 이상의 연서로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이후 절차는 제13조 3항 2호에 따른다.
7. 총학생회를 제외한 자치기구 회장·부회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학생회칙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기구 회원 1/3 이상의 연서로 탄핵을 발의 할 수 있다. 이때 전학대회의장은 해당 자치기구 회원 총회를 소집하여 탄핵안을 심의하고,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각 자치기구 예산안 심의·의결. 단, 부결 시 이의서를 첨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 한다.
9. 각 자치기구의 예산 집행 감사에 관한 감사위원회위원 선출
10. 본 회 특별기구 및 집행부서장에 대한 출석 및 답변요구
11. 본 회 자치기구 및 특별기구 신설 및 폐지에 대한 승인
12. 총학생회 및 자치기구 구성을 하지 못하여 선거가 다음 해로 미뤄졌을 경우 전학대회 대의원을 학회장으로 구성하여 새로운 중선위원을 구성·인준해서 선거진행
13. 기타 안건으로 상정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제21조(의결)전학대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0조 1,5,6,7,9,11,12호는 재적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무)① 전학대회 대의원은 반드시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학대회 참석자 명단을 비치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학대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 종료 후 2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대의원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단, 불참 시 전학대회 하루 전까지 중앙운영 위원회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참관) 본회의 회원은 전학대회의 참관자격을 가진다. 단, 전학대회의 대의원석과 방 청석은 정확히 구분이 되도록 배치한다.

제 4 장 중앙운영위원회

제24조(지위)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라 한다)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25조(구성) ① 전주캠퍼스 중운위는 총·부학생회장, 각 단과대별 학과(부) 학생회장 중 1 인을 호선하여 구성한다. 단, 휴먼테크융합대학의 중운위원은 3명으로 한다.(개정 2024.04.01. 2024.10.14., 2025.04.01.)

② 전주캠퍼스 중운위의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사고나 결위 시 전주캠퍼스 부총학생 회장으로 한다.

③ 진천캠퍼스 중운위는 부총학생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단과대별 학과(부) 학생회장 중 1 인을 호선하여 구성한다.(개정 2024.10.14.)

제26조(업무 및 권한) 중운위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제반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비를 상정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전학대회에 상정
3. 본회의 회비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
4. 위원 2/3의 발의로 전학대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2/3의 요구로 학생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회칙개정안을 발의하여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6. 중운위는 각 집행국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다.
7. 학생회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8. 전학대회 위임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단, 제20조 5, 6호는 제외)
9. 감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있을 경우 재심을 담당한다.
10. 필요한 경우 본회 회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회의소집)중운위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는 매월 초에 소집하며 그 시기는 중운위 위원장이 정한다.
2. 임시회의는 중운위 위원장의 요구나 중운위 위원 1/3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단, 제20조 1, 3, 5, 6, 7, 9, 11, 12호는 2/3 출석과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의결)중운위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6조 3, 4, 5, 6, 8, 9호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회의록작성)중운위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참석자 명단(본인서명)과 회의록을 성·비치하여야 하며, 전학대회 안건 상정 시 회의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 5 장 총 · 부학생회장

제30조(지위)①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 전학대회, 중운위 의장이 된다.

② 총학생회 부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 궐위 시 그 직을 승계한다. 궐위 이외의 사유로 총학생회장이 그 권한 행사를 못할 때 부총학생회장이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호선된 자가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아 총학생회장 업무 및 권한을 대행한다.

④ 2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주캠퍼스, 진천캠퍼스 부총학생회장순으로 그 직을 승계 또는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후임자 임기)회장의 궐위에 따른 직무대행 및 탄핵결정에 의하여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2조(업무 및 권한)총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1. 총학생회 활동에 있어서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수행
2. 중운위를 거쳐 학생총회, 전학대회 소집 요구
3. 중운위를 소집하여 업무를 주관

4. 총학생회 집행부 임원의 인준과 해임
5. 전학대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공고
6. 중운위의 심의를 거쳐 회칙 개정을 발의
7.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자료 요구 시 자료를 제출
8. 학생 자치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 당국에 의견 개진

제33조(신분보장)총(부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의 탄핵결의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단, 근신이상의 징계를 받을시 징계 기간 동안 자격을 정지한다.

제 6 장 중앙집행위원회

제34조(지위)중앙집행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35조(구성)①전주캠퍼스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이 임명한 중앙집행위원장과 위원장이 선임한 부위원장, 임원3명으로 구성한다.

② 진천캠퍼스 중앙집행위원회는 진천캠퍼스 부총학생회장이 임명한 중앙집행위원장과 위원장이 선임한 부위원장, 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③ 총학생회장은 각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장이 선임한 부위원(회)장 및 임원이 구성된 후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반드시 학생지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변경된 임원의 명단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업무 및 권한)중앙집행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집행위원회는 학생총회, 전학대회, 중운위 의결사항을 집행
2.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중운위 및 전학대회에 제출
3. 예산안을 작성하여 전학대회에 제출
4. 중앙집행위원회의 각 국장은 전학대회, 중운위에서 출석을 요구할 경우 출석하여 청문에 응해야 한다.
5. 중앙집행위원회는 제반활동의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다.
 - 가. 중앙집행위원장 : 총학생회 사무관리 및 각 부서 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
 - 나. 기획: 사업 전반에 관한 정책, 기획

- 다. 총무: 서무, 회계에 대한 제반 업무 및 총학생회의 운영전반, 재정에 관한 업무
- 라. 문화: 문화 예술 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 마. 체육: 체육활동 및 교내외의 체육행사
- 바. 봉사: 교내외 봉사활동

제 7 장 특별기구

제1절 학생복지위원회

제37조(지위)학생복지위원회는 본회 회원들의 복지문제를 전담하여 집행하는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이다.

제38조(구성)학생복지위원회는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로 총학생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선임한 부위원장 및 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39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학생복지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학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학생회에서 감사자료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재정)위원회의 재정은 복지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41조(업무)학생복지위원회는 우석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후생복지시설의 증진 및 시설물 보호를 통해 쾌적한 대학생활과 면학풍토 조성에 이바지한다.

제2절 봉사추진위원회

제42조(목적)봉사추진위원회는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봉사정신의 실천을 통한 순수한 나눔의 장을 펼치는데 있다.

제43조(구성)봉사추진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임명하는 부위원장 및 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44조(재정)봉사추진위원회 재정은 학생회의 복지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45조(활동)봉사추진위원회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사회봉사 활동
2. 각종 봉사동아리간의 친선모임
3. 후원 및 지원활동
4. 타 봉사회와 제휴 및 자매결연 봉사활동
5. 봉사활동은 위원장의 재량에 의해 수시로 진행할 수 있다.

제46조(의무)① 회칙을 준수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해야 한다.

② 정기총회, 각종 봉사활동 등의 정례적인 봉사 및 훈련활동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제47조(봉사 시간 및 봉사 활동 확인서의 발급)①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은 교육청, 봉사기관 등 관련 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②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http://www.vms.or.kr>)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제3절 동아리운영위원회(개정 2024.04.01.)

제48조(지위)동아리운영위원회는 전체 동아리를 대표하며, 동아리운영 및 지원을 하는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이다.(개정 2024.04.01.)

제49조(구성)① 동아리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임명하는 부위원장 및 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삭제(2024.04.01.)

③ 별도의 간결한 의결권을 위하여 동아리별 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50조(위원장)① 동아리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동아리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04.01.)

② 위원장은 사업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학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총학생회에서 감사자료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기구) 동아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분과위원회
2. 집행부(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원 2명)(개정 2024.04.01.)

제52조(업무)동아리운영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04.01.)

1. 회원을 위한 편익을 도모하고 동아리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수행.
2. 단위동아리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
3. 정규동아리, 신규동아리 등록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심의
4. 동아리방 배정에 관한 사항
5. 매학기 동아리 등록현황 보고(전학대회 및 학생지도부서)
6. 동아리 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4.04.01.)

제53조(재정)동아리운영위원회 재정은 총학생회에서 배분한 학생회비와 동아리 등록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개정 2024.04.01.)

제54조(등록) ① 단위동아리가 총동아리연합회 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목적을 갖추어야 한다.
2. 동아리회원이 2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4.04.01.) 단, 진천캠퍼스는 별도로 정한다.
3. 동아리회원 구성은 3개 학과(부)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24.04.01.)
4. 기존 동아리는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제반서류(학생단체 조직 승인서, 동아리 등록신청서 2부, 서약서, 사업계획서, 회원명부, 대표자 학생카드, 대표자 성적증명서, 회칙)를 구비하여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04.01.)

5. 위 1,2,3,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정규동아리 자격을 박탈한다.
- ② 신규동아리 등록은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24.04.01.)
- ③ 동아리(기존, 신규) 등록은 매년 1학기 초에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동아리운영위원장이 별도로 정한 등록 기한에 실시한다.(개정 2024.04.01.)

제55조(탈퇴)① 동아리운영위원회는 학년말에 각 동아리활동 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의하며, 활동부진 및 운영이 어려운 동아리는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24.04.01.)

② 동아리 탈퇴에 관한 여부는 위원회 2/3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자치회칙)기구의 구성 및 권한 등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회칙을 둘 수 있다.(개정 2024.04.01.)

제4절 유학생위원회(신설 2024.04.01.)

제56조1(목적)유학생위원회는 본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의 복지증진과 소통 확대를 통해 활기찬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다.(신설 2024.04.01.)

제56조2(구성)유학생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임명하는 부위원장 및 임원 2명으로 구성한다.(신설 2024.04.01.)

제56조3(재정)유학생위원회 재정은 총학생회에서 배분한 학생회비와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신설 2024.04.01.)

제56조4(업무)유학생위원회는 재학 중인 유학생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한국학생과의 교류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4.04.01.)

제56조5(의무)회칙을 준수하고 중앙운영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해야 한다.(신설 2024.04.01.)

제56조6(자치회칙)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회칙을 둘 수 있다. (신설 2024.04.01.)

제5절 장애학생복지위원회(신설 2024.04.01.)

제56조7(목적) 장애학생복지위원회는 장애학생의 복지증진 및 인권강화, 비장애학생과의 유대 및 소통강화를 지원하는 데에 있다. (신설 2024.04.01.)

제56조8(구성)① 장애학생복지위원회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으로 구성한다.

② 총학생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임명하는 부위원장 및 임원 2명으로 구성한다.(신설 2024.04.01.)

제57조9(재정)장애학생복지위원회 재정은 총학생회에서 배분한 학생회비와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신설 2024.04.01.)

제57조10(업무) 장애학생복지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불평등한 인권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활동 및 기타 지원활동을 담당한다.(신설 2024.04.01.)

제57조11(자치회칙)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회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 회칙을 둘 수 있다(신설 2024.04.01.)

제 8 장 삭제(2024.10.14.)

제57조 삭제(2024.10.14.)

제58조 삭제(2024.10.14.)

제59조 삭제(2024.10.14.)

제60조 삭제(2024.10.14.)

제61조 삭제(2024.10.14.)

제62조 삭제(2024.10.14.)

제 9 장 학과(부) 학생회

제63조(지위)학과(부) 학생회는 학과(부) 학생대표기구이다

제64조(구성)학과(부) 학생회는 각 학과(부) 전체학생으로 구성하며 그 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구를 둔다.

제65조(회장)① 학과(부) 학생회장은 피선거권이 있는 자 중 학과(부) 학생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②학과(부) 학생회장은 전학대회 대의원이 된다.(개정 2024.10.14.)

제66조(업무 및 권한) 학과(부) 학생회는 학과(부) 학생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67조(자치회칙)학과(부) 학생회에 필요한 사항은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회칙을 둘 수 있다.

제 10 장 (삭제 2024.04.01.)

제69조 (삭제 2024.04.01.)

제70조 (삭제 2024.04.01.)

제71조 (삭제 2024.04.01.)

제72조 (삭제 2024.04.01.)

제73조(삭제 2024.04.01.)

제74조(삭제 2024.04.01.)

제 11 장 재 정

제75조(재원)① 본회의 재원은 회원이 매 학기 납부하는 학생회비와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본 회의 활동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본회의 회비는 전년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변경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76조(회계연도)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7조(예산)① 예산은 총학생회 및 각 학과(부) 학생회에서 편성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각 기구별 예산액과 사업계획을 항목별로 심의·조정하고 전학대회에서 최종심의 후 확정한다.(개정 2024.10.14.)

② 매 학기 본예산 학생회비의 40%는 총학생회 예산으로 하며, 60%는 학과(부) 학생회 예산으로 편성하되, 추경예산 발생 시에는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조정한다. (개정 2024.10.14.)

③ 삭제(2024.04.01.개정)

④ 전주캠퍼스, 진천캠퍼스 별로 납부한 학생회비를 구분하여 각 전학대회를 통하여 확정한다.

제78조(납부)① 학생회비 납부기간은 1학기 등록금 수납일로 한다.

② 학생회비 납부자에 한하여 학생자치기구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9조(결산)① 총학생회 및 자치기구, 학과(부) 학생회는 1학기 6월 2째주, 2학기 11월 3째주 금요일까지 감사위원회에 결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4.)

② 감사위원회는 6월말, 11월말까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3주간 공고하고 전학대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80조(감사위원회)① 감사위원회는 본회의 감사기구이다.

②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매 학기 수업일수 1/3선까지 감사위원을 구성한다.
2. 감사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감사위원장이 학과(부) 학생회장
에서 호선하여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3. 감사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14.)

③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자치기구 및 특별기구, 학과(부) 학생회의 업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한다.(개정
2024.10.14.)
2. 1·2학기 정기 결산감사를 실시하고, 이 외에 중운위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기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3. 감사 자료를 79조 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1차 경고를 하고 이후 10
일 이내에도 제출하지 아니하면 해당기구 장의 탄핵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04.01.)
4. 감사결과 문제가 발생한 기구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2/3 이상 출석에 출
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전학대회에 상정을 결정하고, 전학대회에서 의결을 거쳐 해당 기구
에 대한 변제요구 기타 상응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감사기간 동안 필요한 재정은 학생회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본 감사지침을 따른다.

1. 감사제출서류는 4항 2호와 같다. 단, 필요 시 감사위원장 재량으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2. 제출 서류

가. 수입·지출 정산서

나. 상세 지출내역서(품목별 수량 및 금액 등 세부사항 기재)

다. 통장 입출금내역 및 통장 사본

라. 현금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또는 거래처 입금내역서

마. 참가자 및 상금(상품) 수령자 명단

바. 행사사진

사. 학생회비 여입 시 여입신청 공문 및 여입액 입금내역서 (개정 2025.04.01.)

⑤ 감사위원회는 전주캠퍼스와 진천캠퍼스를 분리하여 구성한다.(2017.03.28.개정)

⑥ 각 캠퍼스별 감사위원장 및 위원은 상호 협조하여 실시한다.(2017.03.28.개정)

제 12 장 선 거

제81조(선거원칙)본 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제82조(선거권)본 회의 회원은 학생회 선거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83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정한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캠퍼스별로 구성한다.(2017.03.28.개정)

③ 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각 캠퍼스별로 호선하며, 위원은 전학대회 대의원 중 캠퍼스별 투표소 배치 인원내 맞게 위촉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03.28. 2024.10.14.)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의 선거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필요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4조(학생선거관리지도위원회)① 학생선거관리지도위원회는 선거 진행의 공정한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② 학생선거관리지도위원회 구성은 학생취업처장, 학생복지팀장, 학생회 담당, 후보자의 지도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 2명으로 총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선거관리지도위원회는 선거진행 및 당선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논의하며 필요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5조(선거규칙)기타 세부사항은 학생회 선거시행 규정에 따른다.

제 13 장 회칙 개정

제86조(발의)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칙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본회 회원의 1/3 이상의 서면발의
2. 전학대회 대의원 2/3 이상의 서면발의
3.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2/3 이상의 서면 발의
4. 총학생회장의 서면 발의

제87조(의결 및 공포)① 회칙개정의 발의가 있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15일 이내에 개정안을 작성하여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지도위원회는 전체 학생들에게 적용될 회칙이 형평성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중앙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③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개정안은 총학생회장이 즉시, 공고하고 7일 동안의 공고기간을 거친 후 전학대회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학대회에서 의결된 학생회칙 및 학생선거시행규정은 총학생회장이 2일 이내에 공포하고, 개정된 학생회칙 및 학생선거시행규정을 정리하여 학생지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장 인수인계

제88조(인수인계)① 해당 연도 각 자치기구의 장은 임기가 종료되는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신규 자치기구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1. 각 자치기구의 주요업무 내용
2. 각종 서류 일체
3. 자치기구 사무실 내의 집기비품 일체
4. 학생회칙, 학생선거시행규정 또는 자치회칙

② 신·구 자치기구의 장은 인수·인계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학생지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치기구 사무실 내의 집기비품 목록은 학교 비품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품목 및 수량이 이어야 하며, 파손 또는 망실 시 해당 연도 자치기구의 장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시행세칙)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06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